

18.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개 정 이 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물납 및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 나.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법 제73조·제74조·제80조 및 제81조).
- 다.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던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납세자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과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조정함(법 제112조제2항).
- 라. 도시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배율을 5배에서 3배로 하향조정하고, 동 권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만큼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 종과세 대상에서 제외함(법 제112조제3항·제112조의2제1항 및 제138조제1항).

마.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종과세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삭제).

바.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로,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로, 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배기량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하향조정함(법 제13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96조의5제1항).

사.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표준세율제도를 대신하여 1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도를 도입함(법 제176조).

아. 소액부징수제도의 기준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함(법 제179조·제191조·제212조·제234조의20 및 제260조).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를“(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
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의4(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중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를 “90일이내”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60일이내”를 “90일이내”,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중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를 “90일이내”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를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

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1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제1항중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를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이 되거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의2제1항제2호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제138조제1항 본문중 “5배로”를 “100분의 300으로”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를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중 “세액을 등기”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로 한다.

제176조제1항 본문중 “표준세율”을 “세율”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나목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1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78조제2항중 “결정 또는 경정으로”를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로,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를 “결정·경정 또는 환급 세액에”로 한다.

제179조중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2)중 “골프장”을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1)중 “고급선박”을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으로 한다.

제191조중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본문중 “배기량에 씨씨당”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으로 하고, 동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제196조의6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6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6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중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234조의15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중 “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20 및 제260조중 “1,000원미만”을 각각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273조제3항중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을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0조제2항제8호중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을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한다.

제29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을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제3항, 제57조제4항·제5항 및 제77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제2항, 제71조제3항, 제

104조제2호의2, 제112조제4항, 제138조제3항, 제151조의2제2항 단서, 제182조제6항, 제188조제4항, 제211조제2항, 제234조의9제2항제2호, 제234조의18제3항, 제234조의19, 제234조의21제4항, 제274조제3항, 제275조제2항 및 제276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주택회보